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11

발의연월일: 2022. 9. 23.

발 의 자:배현진·김성원·서일준

이용호 · 이철규 · 임병헌

정점식 · 정희용 · 조명희

최형두 • 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또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

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의안번 호 제1752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5 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 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3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22호). 「한 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 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인간문화재"를 "인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무형문화재를 지역적"을 "무형유산을 기역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향유함"을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 한다.

-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를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를 "무형유산의 전승자"로, "무형문화재의 계승"을 "무형유산의 계승"으로 한다.

제6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를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와"를 "무형유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관련"을 "무형유산 관련"으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을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 중"을 "무형유산 중"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를 "위원회"로, "특히"를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를 "무형유산을 긴급히"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를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을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를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가"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을 "국가무형유산을"로, "국가무형문화재의"를 "국가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을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

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무 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을 "국가무형유산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을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를 "전승활동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다.

제23조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을 "무형유산 보

전"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을 "국가 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을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국가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가무형문 화재의"를 "국가무형유산의"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 유산 보유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의"를 "국가무형유산의"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을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의"를 "국 가무형유산의"로, "국가무형문화재를"을 "국가무형유산을"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 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시·도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를 "(시·도무형유

산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제32조의 제목 "(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을 "(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무형문화재로서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중 보존가치"를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로,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시·도무형문화재로"를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시·도무형문화재로"를 "시·도무형유산의원회"로,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무형문화재를"을 "시·도무형유산"으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기"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를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기"로,

교육사의"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시·도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시·도무형문화재 중"을 "시·도무형유산 중"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을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무형문화재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을 "시·도무형문소의 또는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다.

제33조제1호 중 "시·도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시·도무형문화재"를 각각 "시·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4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5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무형유산 및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도

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후단 중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재"는 "시·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한다.

제36조의 제목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를 "무형유산으로서보전가치"로, "무형문화재가 있"을 "무형유산이 있"으로,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를 "무형유산이 전승되고"로, "시·도무형문화재"를 "시·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시·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를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무형유산의 진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을 "(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 유산"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가"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이"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을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을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을 "무형유산의 해외공연"으로,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국가유산기본법」제32조에 따른 한국유산재단에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을 "무형유산 보호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유산"을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유산을"을 "무형유산을"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무형유산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무형문화유산의"를 "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무형문화유산"을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무형유산의 보전"으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무형문화재의 조사"를 "무형유산의 조사"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로, "무형문화재의 진보된"을 "무형유산의 진보된"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를 "(인간무형유산에 대한 예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인간문화재"를 "인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

유산에"로 한다.

제54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문화재 보존·관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으로,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시·도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 제3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각각이 법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로 본다.
- 제5조(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설치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 흥센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및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⑥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u>무형문화재</u>	제1조(목적) <u>무형유산</u>	
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		
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	
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	
당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u>한다.</u>	
	<u>가. 전통적 공연·예술</u>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	
	<u>통기술</u>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u>관한 전통지식</u>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	
	<u>습</u>	

- 2. "전형(典型)"이란 해당 <u>무형</u> <u>문화재</u>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 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 정되어 <u>무형문화재</u>의 기능, 예 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 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 5. ~ 7. (생략)
- 8. "명예보유자"란 <u>국가무형문</u> <u>화재</u>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 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

바. 민간신앙 등 사회석 의식
(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
<u>예·무예</u>
2무형
유산
3
<u>무</u> 형유산
4
<u>무형유산</u>
<u>.</u>
5. ~ 7. (현행과 같음)
8국가무형유
 산

한다.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 10. ----무형유 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 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u>인간문화재</u>"란 제17조 또 11. <u>인간무형유산</u> ------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 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 여 말한다.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 12. -----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 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로서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 --무형유산을 지역적-----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 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 고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을 실현 <u>· 향유함</u>-----실현 · 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3. 무형유산-----

향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국가는 <u>무형문화재</u> 의 보	무) ① <u>무형유산</u>
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	
다.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	②
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	<u>무</u>
<u>형문화재</u> 의 보전 및 진흥을 위	<u>형유산</u>
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	
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u>무형문화재의 전승자</u> 는 전승활	무형유산의 전승자
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u>무형</u>	무형
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	유산의 계승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무형</u>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무형</u>
<u>문화재</u> 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	유산
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

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같음) 전승자의 책무) <u> 선승자</u>-----률과의 관계) <u>무형</u>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u>추진</u>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기본방향
- 2. <u>무형문화재</u>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관한 사항
- 3. <u>무형문화재</u>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4. <u>무형문화재</u>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5. <u>무형문화재</u>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u>무형문화재</u>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③ (생 략)
-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u>무형문화</u> 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무형유산
<u>.</u>
1. <u>무형유산</u>
2. 무형유산
3. <u>무형유산</u>
4. 무형유산
5. <u>무형유산</u>
6 <u>무형유산</u>
②・③ (현행과 같음)
4
<u>무형유산</u> -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9조(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u> 무형유산의</u>
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u>무형문화재</u>	무형유산위
<u>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원회
를 둔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③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1
른 학교에서 <u>무형문화재와</u> 관	<u>무형유산과</u>
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	
던 사람	
2. <u>무형문화재</u> 의 보전 및 진흥	2. <u>무형유산</u>
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3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u>무형문화재 관련</u> 분야 업	<u>무형유산 관련</u>
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으로서 <u>무형문화재에</u> 관한 지	<u>무형유산에</u>
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제위원회는 <u>무형문화재</u>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 2. <u>국가무형문화재</u>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3. <u>국가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보 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 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4. <u>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u>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u>무</u> 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u>무형문화재</u>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 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u>무형문화재</u>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능) ①
무형유산

1. (현행과 같음)
2. 국가무형유산
3. <u>국가무형유산</u>
4.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5
<u>무</u>
형유산
6 <u>무형유산</u>
②
<u>무형유산</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2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u>무형문화재 중</u> 중요한
것을 <u>국가무형문화재</u>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u>국가무형문화재</u> 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u>무형</u>
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특히</u> 소멸할 위험에 처한

재를지정할 수 있다.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지정된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재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u>무형문화재를 긴급히</u>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

- 1. ~ 3. (생략)
- 4. 무형문화재의 기록
- ③ <u>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u>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u>(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u>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문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u>무형유산 중</u>
<u>국가무형유산으</u>
② 국가무형유산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위원회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무형유산을 긴급히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②
1. ~ 3. (현행과 같음)
4. 무형유산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화재청장이 <u>국가무형문화재 또</u> 는 <u>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u>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진 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 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 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6조(국가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u>국가무</u> 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 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생 략)
-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
보호무형유산
,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u>해제)</u> ①국가무형
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
<u>산이</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무형유산을-
국가무형유
산의
,
<u>국</u>
<u>가무형유산</u>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② (생략)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u>국가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u>무형문화재</u>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 하기 어려운 경우

2.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u>국가무형문화</u> <u>재</u>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u></u>
<u>국가무형유산</u>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
<u>국가무형유산</u>
국가무형
 유산
1. <u>무형유산</u>
2. (현행과 같음)
② <u>국가무형유산</u> -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u>국가무형문화재</u> 전승교 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2.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u>국가무형문화재</u>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있다.
 - ② (생략)
-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은 <u>국가무형문화</u>
 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
 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
 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
 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u>국가무</u>
 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
 게 알려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u>국가무형문화</u> <u>재</u>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

국가무형유산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무형유산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그는 건 0 교육기 현
<u>국가무</u>
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
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u>.</u>
②국가무형유산

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u>국가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 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 생한다.

④ (생략)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u>국가무형문화</u> 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16조에 따라 <u>국가무형문화</u>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u>국가무형</u> 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③ 국가무형유산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u>국가무형유산</u>
<u>.</u>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무형유산</u>
5
<u>국가무형</u>
<u>유산</u>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 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u>국가무</u> 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실현· 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 9. (생략)

② (생략)

- 제22조(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 장은 <u>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u>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 하기 위하여 <u>국가무형문화재의</u>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 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 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u>국가무형문화재</u>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 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

6
7 -1 17
<u>국가무</u>
<u> 형유산을</u>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정기조사 등) ①
<u>국가무형유산의 보전</u>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u>,</u>
②
그리면원소기
<u>국가무형유산</u>
③

한 자료의 제출, <u>무형문화재의</u> <u>소재장소</u>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u>국가</u>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있다.
- ⑤ · ⑥ (생 략)
-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u>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u> <u>보호무형문화재</u>의 지정과 그 해제
- 2. <u>국가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보 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 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 3.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u>전승활동 공간</u> -
4
<u>국가</u>
무형유산
<u>.</u>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u>
1.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

2. 국가무형유산
3국가무형유산 및 국

<u>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u>의 보 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생 략)

- 제24조(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u>국가무형문화재</u>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수 있다.
 - 1. <u>국가무형문화재</u> 전승자가 전 승활동 과정에서 그 <u>무형문화</u> <u>재의</u>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 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 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 2.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 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 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 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 위의 금지나 제한
 - 3. 그 밖에 <u>국가무형문화재</u>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

<u>가긴급보호무형유산</u>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신고 사항) <u>국가무형유산</u> -
제24조(행정명령)
국가무형유산
<u>.</u>
1. <u>국가무형유산</u>
<u>무형유산</u>
<u>의</u>
2. 국가무형유산
<u>무형유산의</u>
0 フコロラウル
3 <u>국가무형유산</u>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 자에 대한 <u>무형문화재 보존</u>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 승과 발굴을 위하여 <u>국가무형문</u> 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u>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u>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u>국가무형문</u> 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국가는 <u>국가무형문화재의</u> 이수자 중에서 <u>국가무형문화재 보</u>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무형유산 보전</u>
제25조 <u>(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u> <u>성)</u> ①
<u>국가무형유</u> 산을
<u>산을</u>
<u>국가무형유</u>
<u>산의 전수교육</u>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가무형유산의</u> <u>국가무형유산</u> 보
유자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	제27조(전수장학생) ①
장은 <u>국가무형문화재의</u> 전수교	<u>국가무형유산의</u>
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	
서 <u>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u> 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u>무 등)</u> ① <u>국가무형문화재의</u> 보	<u>등)</u> ① <u>국가무형유산의</u>
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u>국가무형문화재를</u> 공	<u>국가무형유산을</u>
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u>국가무형문화</u>	③
<u>재</u> 의 공개 절차·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u>국가무</u>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u>국가무</u>
<u>형문화재</u> 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	형유산
체는 그 <u>무형문화재를</u> 공개하는	<u>무형유산을</u>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
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u>국가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u>국가무형문화</u>
 <u>재</u>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u>국가무형문화재</u>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제6장 시 · 도무형문화재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시·도에 무형문화재

2
<u>국가무형유산</u>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1 0 /처레기 기 ()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무형유산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장 시·도무형유산
제31조(시·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유산의
<u>무형유산위</u>

- 위원회(이하 "시·도무형문화 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 2. ~ 4. (생략)
- ③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국가 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문화재 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도무 형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 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 할구역 안에 있는 <u>무형문화재로</u> 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u>무형문화재</u>로 지정되지 아니한 <u>무형문화재</u> 중 보존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u>시·</u>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시·도무형문화재로</u>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u>시·도무형문</u> 화재로 지정하려는 무형문화재

원회(이하 "시·노무영유산위
원회"
② <u>시·도무형유산위원회</u>
1.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u>
2. ~ 4. (현행과 같음)
③
<u>시·도무형유산의 국가무</u>
<u> 형유산으</u>
시·도무
형유산위원회
제32조(시・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u>등)</u> ①
<u>무형유산으로서</u>
<u>국가무형유산으</u>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
<u>\lambda\] •</u>
도무형유산위원회
<u>시 · 도무형유산으로</u>
<u>시·도무형유산</u>
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

- <u>가 국가무형문화재</u>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u>시·도무형문</u> <u>화재를</u> 지정하는 경우 <u>국가무형</u> <u>문화재</u>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 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 다.
- ③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 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 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u>시·도무형문</u> <u>화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u>시·도무형문화</u> <u>재 중</u>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 였으나 <u>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u>

<u>가무형유산으</u>
② <u>시·도무형유산</u>
<u>을국가무형</u>
유산
③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
형유산
<u>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u>
유단체, 전승교육사의
4
<u> 무형유산에</u>
<u>시·도무형유산으</u>
⑤ <u>시·도무형유산</u>
위원회
시·도무형유산 중
국가긴급보호무형유

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를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 •도무형문화재 또는 시•도긴 급보호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표 시하여야 한다.
- 제33조(보고 사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 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u>시·도무형문화재</u>의 지정 및 해제
 - 2. <u>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u>의 지정 및 해제
 - 3. <u>시·도무형문화재</u>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 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 4. 시·도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산으</u> <u>무형유신</u>
을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 <u>으</u> -
⑥ <u>人</u> ·
도무형유산 또는 시·도긴급보
호무형유산을
제33조(보고 사항)
1. <u>시·도무형유산</u>
2. <u>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u>
3. <u>시·도무형유산</u>
4. <u>시·도무형유산</u>
-1047 (기 디 이 러 이 -1)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u>무형유산</u>
,

제35조(준용규정) 시 · 도무형문화 재 및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 재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 명예보유자 또는 전 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 ·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 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 수장학생, 시·도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 의 규정 중 "문화재청장"은 "시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 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로, "위원회"는 "시·도무형문 화재위원회"로, "국가무형문화 재"는 "시·도무형문화재"로,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제35조(준용규정) 시 · 도무형유산 및 시・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해제, 지정 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 도무형유산의 보유자・보유단 체 •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 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 · 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 생시기, 정기조사, 시·도무형 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 료의 징수, 시·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 여는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도무형유산위 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 ·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 보호무형유산"은 "시·도긴급 보호무형유산"으----

본다.

- 제36조(이북5도 무형문화재) ① 전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임명된 도지사(이하이 조에서 "도지사"라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그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u>무형</u> 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u>무형문화재</u>로 지정되지 아니한 <u>무형문화재</u>로 지정되지 아니한 <u>무형문화재</u>로 지정되지 아니한 <u>무형문화재</u>로 지정되는 것을 이북5도 <u>무형문화재로 지정할</u>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북5도 <u>무형</u> <u>문화재</u>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장 <u>무형문화재의 진흥</u> 제37조(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 저

· 폐36조(이북5도 무형유산) ①
무형유산으로서 보전
<u>가치무형</u>
유산이 있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u>시·도무형유산으</u>
,
②
<u>무형</u>
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 · 도무형유산으
<u>무형유산 중 보전</u>
<u>가치</u>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③무형유
산
<u> </u>
제7장 <u>무형유산의 진흥</u>
세37조(전승지원 등) ①

는	지방자치단체는 <u>무형문화재</u>
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 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8조(무형문화재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 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 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 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 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 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u>무형유산</u>
1. ~ 3. (현행과 같음)
②
무형유산
③
<u>무</u>
 형유산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u>무</u>
<u> </u>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자가 ----무형유산-----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② -----국가 무형문화재 또는 시 · 도무형문 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 화재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 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 공 -----무형유산-----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 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 • 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 증) ① ~ ⑥ (생 략) 증)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 제44조(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 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원) ①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 무형유산------

작 · 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45조(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u>무형문화재</u>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있다.
- 제46조(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둔다.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 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
<u> 원)</u> ①
<u>무형유산의</u>
해외공연
<u>무형유산의 국</u>
제교류
②
<u>무형유산</u>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
<u>무형유산의</u>
<u>「국가</u>
유산기본법」제32조에 따른 한
국유산재단에 한국무형유산진
흥센터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
킹센터의 설치) 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 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 아·태평양 지역 등의 <u>무형문화</u> 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 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 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 터"라 한다)를 둔다.

- ② ~ ⑥ (생 략)
- ⑦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 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 2. <u>무형문화유산</u>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 3. 무형문화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
- 4. 공유된 <u>무형문화유산</u> 정보의 4. -

<u>무형유산</u>
보호활동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1. <u>무형유산</u>
2. <u>무형유산</u>
3. <u>무형유산</u>
4 <u>무형유산</u>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 5.·6. (생 략)

- ⑧ ~ ⑩ (생 략)
- 제47조의2(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 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 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 스코 협약에 따라 <u>무형문화유산</u> 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u>무형문화유산 보호</u>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 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에 등재된 국내외 무형문화유

5.·6. (현행과 같음)
8 ~ ⑩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u>국제적 협력)</u> ①
<u> 무형유산</u>
②
<u>무형유산을</u>
- <u>무형유산 보호</u>
 @
③
<u>무형유산</u>
1
<u>무형유산의</u>

산의 보전 및 진흥 지원

- 2. <u>무형문화유산</u>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 체 및 다른 국가와의 정보교 류 및 공동 조사·연구
- 3. <u>무형문화유산</u> 보호 분야 국 제 연수 및 전문인력 교류
- 4. <u>무형문화유산</u>의 보호를 목표 로 수행되는 국내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지원
- 5. 그 밖에 <u>무형문화유산</u> 보호 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 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u>무형문</u> <u>화재</u>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 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 ·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 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 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 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2. 무형유산
3. 무형유산
 4. <u>무형유산</u>
 5 <u>무형유산</u>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u>무형유</u>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u>무형유</u>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u>무형유</u>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무형유 산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u>무형</u> 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 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9조(무형문화재의 지식재산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국내외 특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u>무형문화재의</u>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u>무형문화</u> 재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제50조(인간문화재에 대한 예우) 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u>무형유</u> 산의 조사	
]
<u>호)</u> ①	- !_ -
	_
<u>무형유</u> 산을 ② <u>무형유산의 전</u>	_
<u>승활성화</u> <u>무형유산의</u> <u>진보된</u>	<u>}</u> -
	_
 제50조 <u>(인간무형유산에 대한 여</u> <u>우)</u>	<u>]</u>
	_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 단은 <u>인간문화재</u>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 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u>국가무형문화재의</u>
지정 및 제13조의 <u>국가긴급보호</u>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
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
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 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인간무형유산
<u>.</u>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u>국가무형유산</u>
<u>국가긴급보호</u>
<u> 무형유산</u>
<u> 무형유산에</u>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u> 무형유산</u>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u>문화재</u>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 사·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 (제31조제1항에 따른 <u>시·도</u>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 4. (생략)

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u>무형유산</u>
<u>의 보전 및 진흥</u>
시·도
<u> 무형유산위원회</u>
2. ~ 4. (현행과 같음)